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대출계약 변경 신청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공제계약대출의 이자납부일 또는 대출계좌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○신청인

성명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	

○신청구분(해당란에 √표시)

구분		변경 전	변경 후
☐ 대출이자 납부일 변경		매월 () 일	매월 () 일
☐ 대출계좌 변경	거래은행		
	계좌번호		
	※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iM뱅크, 부산, 산업, 수협, 신한, 씨티, 우리, 전북, SC제일, 제주, 하나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협 중 택일 ※ 계약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(법인통장 사용불가)		

※ 대출이자납부일 변경의 경우 변경 기산일의 부금납부기일 2일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대출계좌 자동이체에 관한 약정사항 -

1. 위 계좌변경의 경우 공제계약대출금의 지급·상환 등 공제계약대출 관련 일체의 거래에 관한 계좌로 지정·신청합니다.

2. 대출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미납된 것으로 보며, 미납 해소를 위해 익일부터 일정기간 이체 처리합니다.

3. 위 대출계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하여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며 이체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